

계룡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6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관할구역중 시에서 관리 할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 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제3조제1항에 의한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 거리 이내의 구간.

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 (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 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 (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준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 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0조 (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 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 등에서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 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는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기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연결로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 차로와 연결할 것
7. 기존에 설치된 변속 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1조 (연결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 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 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 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 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 (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 (공사시행) 당해 연결로 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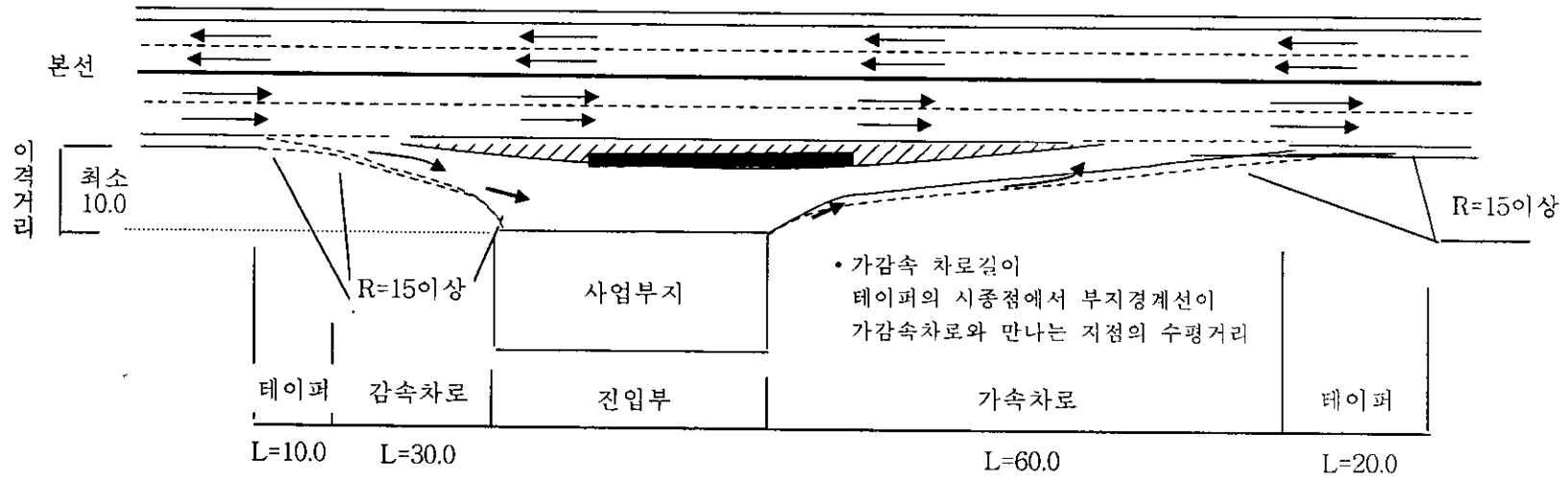
연결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도면명	작성요령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면도	종방향 1/1,200 이상, 횡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양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공사도	연결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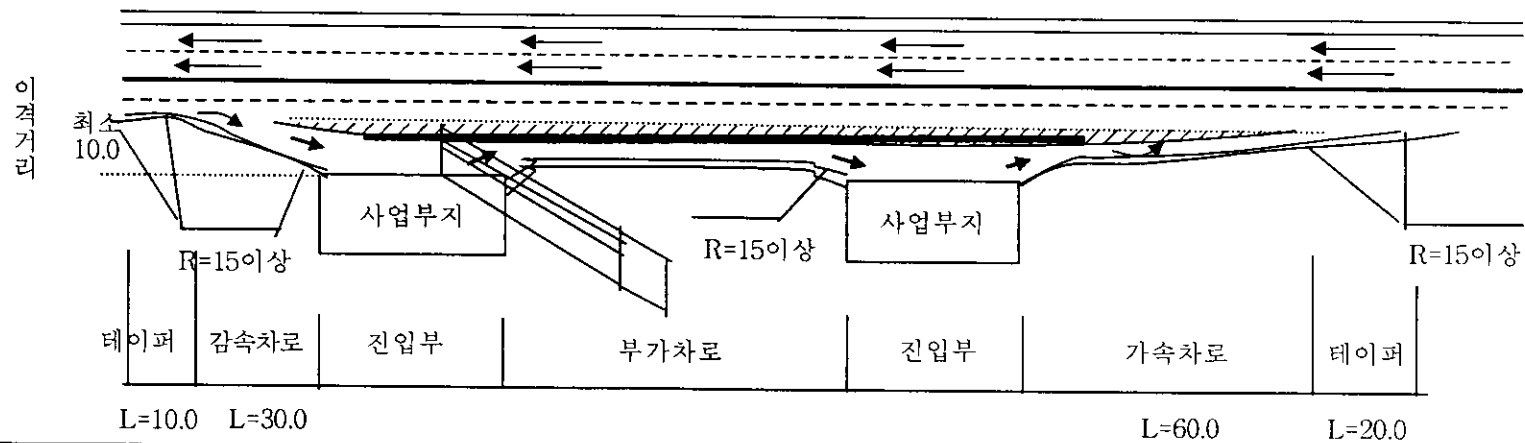
[별표2]

연결로등의 설치방법 (제4조 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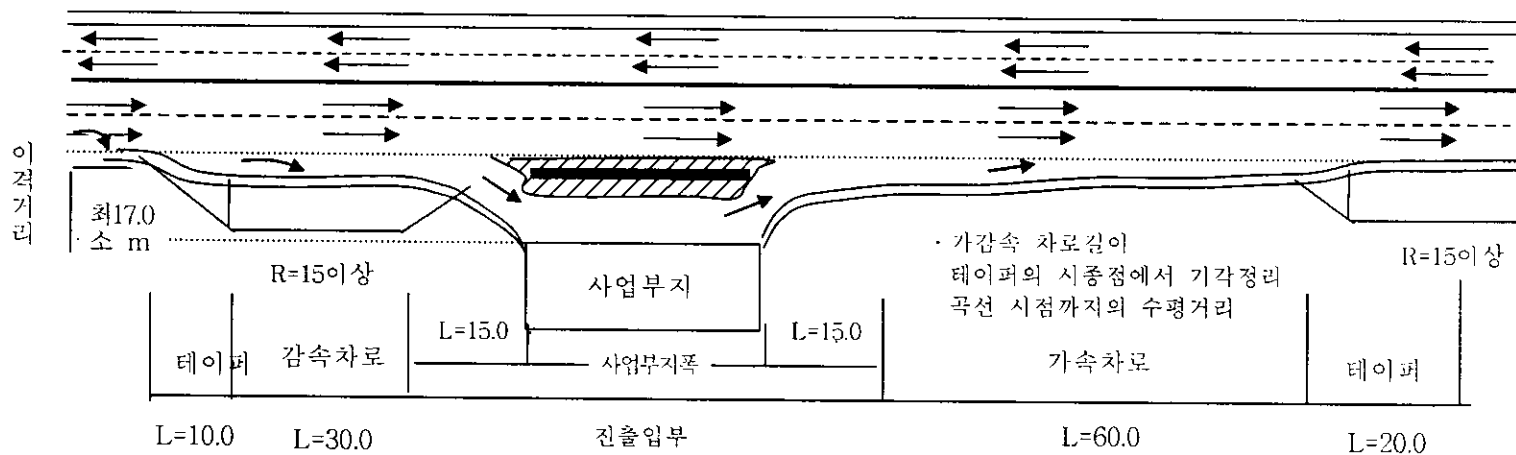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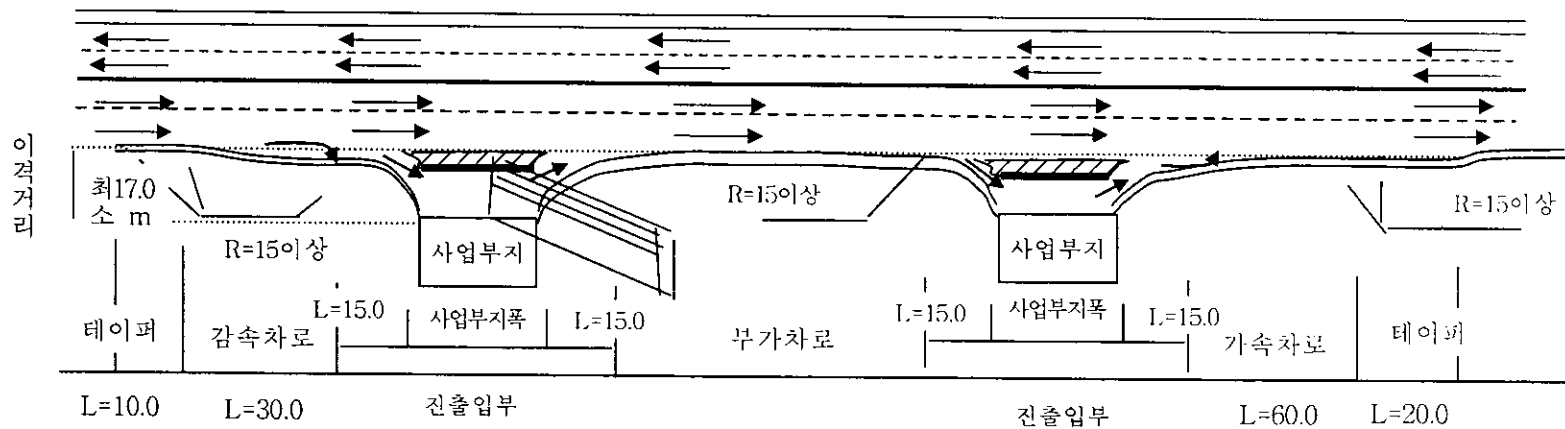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 비고 : 위 표중 R은 곡선반경,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로 한다

[별표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4]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 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변속차로, 회전차로 등의 도류화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도류화시설의 설치예정구역)으로부터 연결로등 접속시설의 설치제한거리	60	40

비 고

1. 도류화되지 아니한 교차로에 대하여는 당해 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류화 계획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 당해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별표5]

변속차로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2. 휴게소·주유소 등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20(15) [10]	45(30) [15]	10(10) [10]	20(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10대 이하	20(15) [10]	45(30) [15]	10(10) [10]	20(20) [20]
	11~30대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31대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20(20) [20]
6. 주차장·운수시설·의료시설· 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 시설 및 위락시설	30대 이하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31대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20(2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15) [10]	45(30) [15]	10(10) [10]	20(20) [20]
	21대~50대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51대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20(20) [20]
8. 주택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3m)	
	(100가구 이하)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101가구 이하)	45(30) [20]	90(65) [40]	15(10) [10]	20(20) [20]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⑤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				
⑥도로의 연결지점				
⑦사용목적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및 계룡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수 수 료
				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